

# 원주시 보조금 교부결정서

보조사업자 주 소 : [Redacted]

기관단체명 : [Redacted]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 하오니, 「지방보조금법」 및 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 : 2022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사업

2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년 7월 12일 ~ 12월 31일

○ 사업지역 : [Redacted]

○ 사업내용

- 광역살수기(이동식, 고정식 각 1개) 설치공사

3. 예산과목 : 신속허가과, 도시개발, 도시개발사업,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, 민간자본이전,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 402-02

4. 교부결정액 : 금 [Redacted]

5. 보조금 교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총 사업비 (A+B)	교부액			자부담액 (B)	비고
	지원결정액(A)	기교부액	금회교부액		
[Redacted]	[Redacted]	-	[Redacted]	[Redacted]	실적별 보조금 지급예정

※ 붙임 :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.

2022년 7월 12일

원 주 시 장

(직인)